

광주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가단5048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기원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9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. 11. 8. 체결된 235,920,000원에 대한 증여를 취소한다. 피고는 위 235,92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8,253,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E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4272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9. 6. 'D은 소외 회사에게 91,356,712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6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'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6. 9. 24. 확정되었다. 그 후 소외 회사는 2019. 10.경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을 양도하였다.

나.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.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G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11. 8. 공유권자인 소외 H, I 주식회사로부터 2016. 11. 18.자 매매(거래가액 532,920,000원)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피고는 2019. 11. 8. J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8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8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'이 사건 대출금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(청구원인)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532,920,000원에 매수하였다. 피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217,000,000원과 이 사건 대출금 80,000,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, 전업주부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235,920,000원(= 532,920,000원 - 217,000,000원 -

80,000,000원)은 배우자인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. 따라서 2019. 11. 8.(이 사건 부동산 매수일)자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108,253,698원(91,356,712원 및 20,000,000원에 대한 2016. 8. 27.부터 2021. 2. 5.까지의 지연손해금 16,896,986원의 합계)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235,920,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

따라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태